

2024년 공능유적본부[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1차) 최종합격자 공고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2024년 1차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공능유적본부장

□ 최종 합격자 명단

응시분야	직종	근무지	응시번호	합격자	비고
시설물관리원 다급	공무직	고양 서오릉	01	전○○	
안전관리원(주간)	공무직	고양 서삼릉	01	백○○	
안전관리원(야간)	공무직	양주 온릉	-	적격자 없음	
	공무직	화성 용건릉	01	방○○	

※ 최종합격자는 별도 연락 예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일시: 2024. 2. 14.(수) 14:00
- 제출장소: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 1] 양식에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 1장 및 통장사본 1부, 도장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붙임 2] 양식에 작성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공지사항

-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359-8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8월 7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 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123456-1234567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2)

결격사유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본인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확인자:

(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